

제2조(「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」의 개정)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제248호”를 “제334호”로, “2016년”을 “2019년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)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제248호”를 “제334호”로, “2016년”을 “2019년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질병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수임기관 지정」의 개정) 질병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수임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제248호”를 “제334호”로, “2016년”을 “2019년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」의 개정)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제248호”를 “제334호”로, “2016년”을 “2019년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」의 개정)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의 효력발생 시점과 해제 시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지한다.

제2조 중 “제248호”를 “제334호”로, “2016년”을 “2019년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6조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정되어 검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검역감염병으로 검역을 하되, 그 해제 시점은 제6조 개정규정에 따른다.

● 환경부고시제2016-240호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·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2017년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
2016년 12월 29일

환 경 부 장 관

1. 전기·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

대 상	2017년도
27개 품목 (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3)	5.4kg/인

2. 행정사항

○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